중앙소방학교 공고 2015-68호

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16년도 제22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22일

중앙소방학교장

1. 관련근거

○ 「소방공무원법」 제6조(신규채용),제10조(응시자격 및 방법)

○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34조(시험실시권), 제38조(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), 제42조(채용시험특전), 제44조(시험과목), 제46조(시험의 합격결정)

○ 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제23조(응시자격), 제24조(채용시험특전)

2. 선발인원 및 임용배치

○ 선발인원 : 30명(남자 26명, 여자 4명)

○ 임용배치 : 1년간 교육 후 지방소방위로 임용, 일선 소방관서 배치

3. 시험구분 및 일정

원서접수	시 험 구 분	시험 일자	시험 장소	합격자 발표
'15. 11. 2(월) 09:00 ~ '15. 11. 6(금) 18:00	제1차 시험(필기시험)	'16. 1. 9(토)	'15. 12. 30(목) 공고	'16. 1. 19(화)
	제2차 시험(체력시험)	'16. 1. 27(수)	중앙소방학교	'16. 2. 24(수)
	제3차 시험(신체검사)	'16. 1. 28(목)	미 정	
	적성검사		중앙소방학교	면접위원 배부용
	제4차 시험(면접시험)	'16. 3. 3(목)	중앙소방학교	'16. 3. 9(수)

※ 공고(합격자 발표)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(www.nfsa.go.kr)와 www.119gosi.kr 에 게시

4. 응시자격 등

가. 응시연령 : 21세 이상 40세 이하('75. 1. 1 ~ '95. 12. 31일 사이 출생자)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·여

〈응시 상한연령 연장〉

군복무기간	1년 미만	1년 이상~2년 미만	2년 이상
연장기간	1세	2세	3세

나. 응시자격

○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

※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, 최종 입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

○ 「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」 [별표5]"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"(붙임 1)에 적합한 자

※ 기타 사항은 「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」 [별표3]"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"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
○ 공무원임용 결격사유(국가공무원법 제33조)에 해당하지 않는 자(붙임 2)

○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 중이 아닌 자

5.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기간 : 2015년 11월 2일(월) ~ 2015년 11월 6일(금) / 5일간

※ 접수기간 내 24시간. 단, 시작일(11.2) 09:00부터, 마감일 (11.6) 18:00까지 운영

나. 접수장소 : 중앙소방학교 인터넷 원서접수 시스템(http://www.119gosi.kr)

다.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

○ 응시원서 등록용 권장 사진파일(JPG) 규격은 3.5cm×4.5cm이며, 해상도 100 DPI 이상으로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,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음

○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 보관 하고, 응시표 출력은 2016년 1월 4일(월) 이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수험생이 직접 출력하여 단계별 시험에 지참

○ 시험응시에 필요한 가점 관련 증빙자료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

○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,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

○ 응시수수료(7,000원)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, 신용카드 결제, 계좌이체 비용)은 별도로 부과 됨

○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,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 환불

6. 시험구분

가. 필기시험 : 2배수 선발 예정

○ 일시 : 2016. 1. 9(토) 10:00 ~ 12:05 (125분)

※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완료(시간 초과시 입실 절대 불가)

○ 장소 : 충남 천안지역('15. 12. 30. 별도 공고)

○ 과목 : 6과목(필수 4과목 / 선택 2과목)

필수 과목 (4)	선택 과목 (2)
영어, 한국사, 헌법, 소방학개론 **※ 영어는 "영어능력검정시험"으로 대체 시행(붙임 3)**	행정법, 행정학, 민법총칙, 형법, 형사소송법, 경제학, 자연과학개론, 물리학개론, 화학개론, 기계학개론, 전기공학개론, 정보통신공학개론, 건축공학개론,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

※ 필기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(붙임 4)

○ 문항 및 배점 : 각 과목별 25문항(객관식 5지 택일형) / 100점

○ 합격기준 : 매 과목 40%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나. 체력시험

○ 시험일시 : 2016. 1. 27(수) 13:00 ~ 17:00

○ 시험장소 : 중앙소방학교

○ 시험종목 : 배근력 등 6종목(붙임 5)

○ 평가방법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함

○ 합격기준 : 6종목 총점의 50% 이상 득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

❖ 도핑테스트 실시 : 응시인원의 7% 무작위 선정 실시

★ 관련근거
*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51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
*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-7호(`14.12.31) 「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」

★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 : 안내문 참조(붙임 6)

다. 신체검사

○ 일시 : 2016. 1. 28(목) 09:00 ~ 12:00

○ 방법 : 천안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단체로 실시(개인별 수수료 납부)

○ 합격기준 :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

라. 적성검사

○ 일시 : 2016. 1. 28(목) 14:00 ~ 16:00

○ 장소 : 중앙소방학교

○ 방법 :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, 결과는 면접위원 배부 예정

마. 면접시험

○ 일자 : 2016. 3. 3(목) 09:00 ~ 17:00

○ 장소 : 중앙소방학교

○ 평정요소 :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

○ 합격기준 :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%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,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%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

7. 최종합격자 결정

○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75%, 체력시험성적 15% 및 면접시험 성적 10% 비율로 합산한 성적(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)의 고득점자 순위에 따름

○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제47조에 의거 그 선발 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

8. 가산 특전(붙임 7)

가.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

(☛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○『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31조,『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제16조,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35조, 『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제7조제9항,『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』제22조,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제24조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10% 또는 5%를 가산

○ 단,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(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)

나. 자격증 소지자

(☛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최종합격(발급)되어 최종 발표 시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

○ 자격증(면허증)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,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, 각 분야 내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(면허증)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, 2개 분야 가점은 합산하여 0.5할을 초과할 수 없음

○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,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붙임 6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

다. 유의사항 :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가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,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을 시 가점되지 않음

※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「국가보훈처」에 확인하여야 함

9.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

가. 대상시험 및 기준 점수

대상시험	TOEFL			TOEIC	TEPS	G-TELP	FLEX
	PBT	CBT	IBT				
기준 점수	530점 이상	197점 이상	71점 이상	700점 이상	625점 이상	level 2 65점 이상	625점 이상

나.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○ 2014. 1. 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

※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G-TELP 성적은 인정

○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**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**하고, 정부기관 · 민간회사 · 학교 등에서 승진 · 연수 · 입사 · 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· 특별시험 등은 인정 불가

다. 성적 제출방법

○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('15. 11. 2. ~ 11. 6.) 내에 하여야 하며,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(http://www.119gosi.kr)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제출

○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사용하여야 함

※ 해당 시험기관에 확인하여 점수가 다르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(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), 원본 제출 및 소명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

9. 응시자 유의사항

가.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나.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(연령, 영어성적, 가산점, 자격증 등)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
다.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착오 및 누락,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라. 필기시험 응시자는 당일 시험응시표, 신분증 및 필기구(반드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)를 지참,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간엄수 입실 완료합니다.

마.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(휴대폰, PDA, MP3플레이어, 무선호출기, 이어폰 등) 및 수정액,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,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바. 각 단계별 시험실시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지 않은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사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.

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 바랍니다.

※ 문의처 :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(☎ 041-550-0961)
주소 :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우편번호: 31068

[참조자료]

붙임 1.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조건표

2.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(국가공무원법 제33조)

3.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

4. 필기시험 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

5.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

6.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

7.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

【붙임1】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[별표 5] <개정 2006.12.21>

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

부 분 별	합 격 기 준
체 격	체격이 강건하고 팔·다리가 완전하며, 가슴·배·입·구강·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.
흉 위	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
시 력	두 눈의 나안(裸眼)시력이 각각 0.3 이상이어야 한다.
색신(色神)	색각이상(色覺異狀){색맹 또는 적색약(赤色弱)을 말한다}이 아니어야 한다.
청 력	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.
혈 압	고혈압(수축기혈압이 145㎜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㎜Hg을 초과하는 것) 또는 저혈압(수축기혈압이 90㎜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㎜Hg 미만인 것)이 아닐 것
운동신경	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.

※ 기타 사항은「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」(별표3)「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」참고

【붙임2】 국가공무원법 제33조

공무원 임용 결격사유

국가공무원법
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【붙임3】 소방공무원임용령 [별표 6]

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

(제44조 단서 관련)

시 험 의 종 류		기 준 점 수
토 플 (TOEFL)	미국의 교육평가원(Education Testing Service)에서 시행하는 시험(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)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.비.티.(PBT: Paper Based Test), 시.비.티.(CBT: Computer Based Test) 및 아이.비.티.(IBT: Inernet Based Test)로 구분한다.	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
토 익 (TOEIC)	미국의 교육평가원(Education Testing Service)에서 시행하는 시험(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)을 말한다.	700점 이상
텝 스 (TEPS)	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(Test of English Proficiency, Seoul National University)을 말한다.	625점 이상
지텔프 (G-TELP)	미국의 국제테스트연구원(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)에서 주관하는 시험(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)을 말한다.	Level 2의 65점 이상
플렉스 (FLEX)	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(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)을 말한다.	625점 이상

비고: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정하며, **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**

【붙임4】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[별표 1]

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

분 야		내 용
소방조직	1) 소방조직	- 소방의 발전 과정 -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-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- 소방자원관리(인적, 물적,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) -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(의용소방대, 방화관리자, 위험물안전관리자, 소방시설 설계·시공·감리·점검, 소방용 기계·기구의 제조·검정)
	2) 소방기능	- 화재의 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활동 -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- 위험물 안전관리 - 구조·구급 행정관리와 구조·구급 활동 -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
재난관리	1)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	- 재난의 특징과 유형 -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
	2)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(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)	-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- 긴급구조 - 안전관리계획, 예방, 대비, 응급대책, 복구,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
연소이론	1) 연소개요 등	-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- 연소의 조건 및 형태 - 발화의 조건 및 과정
	2) 연기 및 화염	- 연기의 정의 - 연소 가스 -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-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
	3) 폭발개요 및 분류	- 폭발의 조건 - 화학적 폭발 (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) -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- 폭연과 폭굉 - 가스·분진·분해 폭발 -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

분 야		내 용
화재 이론	1) 화재의 정의 및 분류	- 화재의 정의 - 화재의 종류(일반, 유류, 전기, 금속, 가스)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
	2) 건물화재의 성상	-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- 특수현상(플래시오버, 백드래프트 등)과 대처법
	3) 위험물화재의 성상	- 위험물의 류별(제1류 ~ 제6류) 특성과 소화방법 -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
	4) 화재조사	- 화재조사의 개요(목적, 방법, 절차 등) -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
소화 이론	1) 소화 원리	- 소화의 기본 원리(방법) - 소화 방법(냉각·질식·제거·부촉매 효과)별 소화 수단
	2) 소화약제	-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-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-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-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-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
	3) 소방시설	-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-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-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-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-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※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

【붙임5】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[별표 7]

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(제23조의2 관련)

종 목	성별	평 가 점 수									
		1	2	3	4	5	6	7	8	9	10
악력(kg)	남	45.3~48.0	48.1~50.0	50.1~51.5	51.6~52.8	52.9~54.1	54.2~55.4	55.5~56.7	56.8~58.0	58.1~59.9	60.0 이상
	여	27.6~28.9	29.0~30.2	30.3~31.1	31.2~31.9	32.0~32.9	33.0~33.7	33.8~34.6	34.7~35.7	35.8~36.9	37.0 이상
배근력(kg)	남	147~153	154~158	159~165	166~169	170~173	174~178	179~185	186~194	195~205	206 이상
	여	85~91	92~95	96~98	99~101	102~104	105~107	108~110	111~114	115~120	121 이상
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(㎝)	남	16.1~17.3	17.4~18.3	18.4~19.8	19.9~20.6	20.7~21.6	21.7~22.4	22.5~23.2	23.3~24.2	24.3~25.7	25.8 이상
	여	19.5~20.6	20.7~21.6	21.7~22.6	22.7~23.4	23.5~24.8	24.9~25.4	25.5~26.1	26.2~26.7	26.8~27.9	28.0 이상
제자리멀리뛰기(㎝)	남	223~231	232~236	237~239	240~242	243~245	246~249	250~254	255~257	258~262	263 이상
	여	160~164	165~168	169~172	173~176	177~180	181~184	185~188	189~193	194~198	199 이상
윗몸일으키기(회/분)	남	43	44	45	46	47	48	49	50	51	52 이상
	여	33	34	35	36	37	38	39	40	41	42 이상
왕복오래달리기(회)	남	57~59	60~61	62~63	64~67	68~71	72~74	75	76	77	78 이상
	여	28	29~30	31	32~33	34~36	37~39	40	41	42	43 이상

비고

1. 「소방공무원임용령」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.
2.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.

※ 체력시험 측정방법 : 「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」 제7조 및 [별표 4]

【붙임6】

『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』 안내문

□ 도핑테스트 시행안내

-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,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(도핑테스트)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
□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

- 「**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**(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-7호)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**(별표 참조)**은 금지됩니다.

□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

-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

□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

- 채취된 소변 시료(A, B)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,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,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.
-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.
-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가 나온 경우,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,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.
-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,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,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,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,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,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.
-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,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□ **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**

- **(의의)**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**(신청절차)**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가 나온 경우 **별첨의 서식**을 작성, 구비서류를 갖추어 **별도 지정일까지 신청**하여야 합니다.(단,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)
- **(승인기준)**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.

▶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,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.

▶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.

▶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.

□ **기타 유의사항**

-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응시자는 **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**하여야 하며, **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
  ※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
-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, 비정상분석결과(양성)가 나온 경우에는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
별표 **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**

Ⅰ. 금지약물

○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.

1. 동화작용제 :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[1)]

가.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(AAS)

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(Exogenous AAS)
- drostanolone
- methenolone
- methasterone(17β-hydroxy-2α,17α-dimethyl-5α-androstan-3-one)
- stanozolol
- 1-testosterone(17β-hydroxy-5α-androst-1-en-3-one)

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(Endogenous AAS)
- testosterone

나. 기타 동화작용제 : Clenbuterol

2. 이뇨제 : 총 3종

- hydrochlorothiazide
- chlorothiazide
- furosemide

3. 흥분제 : 총 3종

- methylhexaneamine(dimethylpentylamine)
- methylephedrine
- ephedrine

※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.

4. 마약류 : 총 11종

- Buprenorphine
- dextromoramide
- diamorphine(heroin)
- fentanyl 및 유도체
- hydromorphone
- methadone
- morphine
- oxycodone
- oxymorphone
- pentazocine
- pethidine

Ⅱ. 금지방법

○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(소변 바꿔치기 및/또는 섞기,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.)

1)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

별첨 서식	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

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

1. 응시자 인적사항

1. 성명:_____ 2. 성별: 여 □ 남 □

3. 생년월일:_____ 4. 응시번호:_____

5. 핸드폰:_____ 6. 이메일:_____

2. 의료정보

1)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

_____

_____

_____

2)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,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

_____

_____

_____

※ **진단 증빙자료(진단서,처방전,소견서등)를 첨부**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,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.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,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,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.

3. 세부 진료내용

금지약물	1회 사용량	사용방법	사용빈도
1.			
2.			
3.			

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:	1회 □ 응급 □ 기간(주/월)_____

4. 담당의사 서약

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,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.

성명:_____ **전공분야**:_____

주소:_____

전화.:_____**팩스**:_____**이메일**:_____

서명:_____**날짜**:_____

5. 응시자 서약

본인,_____는(은)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.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,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.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.

서명:_____**날짜**:_____

부모/보호자 서명:_____**날짜**:_____

(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.)

※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,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.
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.

【붙임7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〔별표 2〕

[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]

분야 \ 가점비율	0.5할		0.3할		0.1할	
자격증 (면허증)	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·기능장	건축구조,건축기계설비,건축시공,건축품질시험,건축목재시공,건축일반시공,건설기계,공조냉동기계,산업기계설비,건설기계정비,철도차량,철도차량정비,조선,항공기관,항공기체,차량,자동차정비,화공,위험물,건축전기설비,발송배전,전기응용,전기철도,철도신호,전기,산업계측제어,전자응용,전자기기,정보관리,컴퓨터시스템응용,정보통신,통신설비,가스(기능장),건설안전,기계안전,산업위생관리,소방,인간공학,전기안전,화공안전,비파괴검사,방사선관리,원자력발전,에너지관리	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	건축,건축설비,실내건축,건설기계설비,건설기계정비,궤도장비정비,공조냉동기계,설비보전,승강기,농업기계,메카트로닉스,철도차량,조선,항공,자동차정비,그린전동자동차,화공,화약류제조,화학분석,생물공학,전기,전기공사,전기철도,철도신호,광학,반도체설계,의공,전자계산기,전자,임베디드,전자계산기조직응용,정보처리,정보보안,방송통신,무선설비,전파전자통신,정보통신,가스,건설안전,산업안전,산업위생관리,소방설비(기계,전기),인간공학,화재감식평가,누설비파괴검사,방사선비파괴검사,와전류비파괴검사,자기비파괴검사,초음파비파괴검사,침투비파괴검사,원자력,에너지관리,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	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·기능사	건축,건축목공(기능사),건축설비,건축일반시공,방수(기능사),실내건축(기능사),거푸집,건축도장,도배,미장,비계,온수온돌,유리시공,전산응용건축제도,조적,철근,타일,양화장치운전,지게차운전,굴삭기운전,기중기운전,로더운전,롤러운전,모터그레이더운전,불도저운전,아스팔트피니셔운전,천장크레인운전,컨테이너크레인운전,타워크레인운전,천공기운전,건설기계설비,건설기계정비(기능사),궤도장비정비(기능사),공조냉동기계(기능사),기계정비(기능사),승강기(기능사),전자부품장착(기능사),농업기계,생산자동화(기능사),설비보전,농기계정비,반도체장비유지보수,철도차량,철도차량정비,조선,동력기계정비,선체건조,전산응용조선제도,항공,항공기관정비,항공기체정비,항공장비정비,항공전자정비,자동차정비(기능사),자동차보수도장,자동차차체수리,화약류제조,화학분석,위험물(기능사),전기(기능사),전기공사,전기철도,철도신호,철도전기신호,광학기기,반도체설계,의공,전자계산기제어,전자,광학,의료전자,전자계산기,전자기기,전자캐드,사무자동화,정보처리(기능사),정보보안,정보기기운용,방송통신(기능사),무선설비(기능사),전파전자통신(기능사),정보통신,통신선로(기능사),통신기기,가스(기능사),건설안전,산업안전,산업위생관리,소방설비(기계,전기),화재감식평가,방사선비파괴검사(기능사),자기비파괴검사(기능사),초음파비파괴검사(기능사),침투비파괴검사(기능사),에너지관리(기능사),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(태양광)(기능사)
	1급~4급 항해사·기관사·운항사		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·운항사		소형선박조종사, 잠수산업기사, 잠수기능사	
	사업용조종사,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				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, 제1종 대형운전면허	
	의사, 변호사				응급구조사1급, 간호사	
	소방시설관리사					
사무관리			컴퓨터활용능력 1급		컴퓨터활용능력 2급 · 3급	